

##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 제1조 【적용범위】

비과세 종합저축 (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등(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5년 가입자 : 만 61세 이상, 2016년 가입자 : 만 62세 이상, 2017년 가입자 : 만 63세 이상, 2018년 가입자 : 만 64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제3조 【대상 예금 등】

우체국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은 제외한다.

### 제4조 【예치한도】

-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 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한다.
-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다.

### 제5조 【예치한도 산정】

- 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 ② 정액(정기)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 【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한다.

### 제8조 【표시방법】

이 저축 가입자는 신규가입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 제11조 【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다.

### 제12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 계좌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제14조 【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비과세 종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비과세 종합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 칙**

-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